



제 432회 국회 (임시회)
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부담금 이의신청 신청·통지 기간의
「행정기본법」 특례 신설〉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16237호)

2026. 2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전문위원 강 대 훈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부담금 이의신청 신청·통지 기간의 「행정기본법」 적용 제외 근거 신설 등(안 제13조)	2

I. 제출경위

가. 제 출 자 : 정 부

나. 제출일자 : 2026. 1. 22.

다. 회부연월일 : 2026. 1. 2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,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「행정기본법」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부담금 이의신청 신청·통지 기간의 「행정기본법」 적용 제외 근거 신설 등(안 제13조)

가. 주요 내용

- 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하면서(제6항),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통지기간을 「행정기본법」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(제7항), 그 밖의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(제8항).

현행	개정안
제13조(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) ① ~ ⑤ (생략)	제13조(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⑦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</u>
<u>⑥ (생략)</u>	<u>⑨ (현행 제6항과 같음)</u>

나. 검토의견

□ 현행법 제13조¹⁾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(이하 “부담금”)을 부과하도록 하고,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²⁾는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장관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, 현재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한국수력원자력 1개 기관이며,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전전년도 발전량 (kWh) × 1.2원에 해당하는 금액(2025년 기준 약 2,165억 2,527만원)을 매년 분기별로 부담하고 있음.

-
- 1) 「원자력 진흥법」 제13조(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)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
-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.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-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「원자력 진흥법 시행령」 제15조의2(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5조에 따라 납부 고지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□ 한편,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공통적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, 개별법에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「행정기본법」이 적용되며, 동 법에 따라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, 행정청은 14일 이내(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)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음.

< 「행정기본법」 상 이의신청 기간 관련 조문 >

제36조(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행정청의 처분(「행정심판법」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<u>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</u>을 할 수 있다.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<u>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</u>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③ ~ ⑤ (생략)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<u>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⑦ ~ ⑧ (생략)

□ 그런데 현행법은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도 「행정기본법」과 달리 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정합성에 문제 소지가 있으며, 당사자의 권리구제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규정하던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,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「행정기본법」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.

○ 개정안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이의신청 관련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「행정기본법」과 다르게 규정해야 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,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인데,³⁾

○ 특히 현행 「원자력 진흥법 시행령」은 「행정기본법」보다 이의신청 기간을 길게 정하는 등 당사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「행정기본법」과 달리 현행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점은 바람직해 보임.

< 「행정기본법」과 「원자력 진흥법」 시행령 상 이의신청 규정 비교 >

주요 내용	행정기본법 (제36조)	원자력진흥법 시행령 (제15조의 2)
당사자 이의신청 기간	30일	60일
이의신청 접수 후 회신기간	14일 (+10일 연장가능)	15일

3) 대통령령으로 「행정기본법」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법률안이 각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4건이 심사 중임.

법안명	소관상임위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	교육위원회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	교육위원회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	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	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

자료: 의안정보시스템(2026.2.20.기준)

□ 다만, 이의신청 기간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기간의 구체적 범위·한계를 법률에서 정하여 위임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○ 특히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 제5조의4⁴⁾는 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, 부담금이 강제적 금전납부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는 것이 적절할 것임⁵⁾.

문 의 처
02)6788-5229

4)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 제5조의4(권리구제절차)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·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.

5) 「법제기준과 실제(2024년 개정증보판)」 p458 참조

* 참고로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 기한을 직접 명시하는 정부안(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, 의료법,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)도 3건이 제출되어 있음.